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2:00 (중·고등부)	15:00 (유·초등부)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김인기 베드로 010-5311-7604/869-5965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야	6월 21일(일) 11:40	강 당
성체분배자회	6월 22일(월) 19:40	성체조배실
제대헌화회	7월 1일(수) 11:00	6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7월 3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7월 4일(토) 17:30	강 당

● 알 림

- 오늘(6/21,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날’ 단식 희생 봉헌 2차헌금이 있습니다.
- 6월 26일(금) 저녁미사후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 6월 28일(일)은 교황 주일로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6/28) 청소 담당 : 16구역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 기간 : 2026년 6월 17일(수)~25일(목)
- 방법 : 미사 전, 후 기도문 함께 봉헌
- 지향 : 민족의 화해와 일치
(가톨릭 기도서 109쪽/ 매일미사 184쪽)
- 6월 21일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 6월 22일 :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 6월 23일 :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를 위하여
- 6월 24일 :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 6월 25일 :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 영적 예물 봉헌

- 교구장님의 영명축일(6월29일)을 맞이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내용 : ① 미사 및 영성체 ② 목주기도 ③ 성체조배 ④ 희생 ⑤ 주교를 위한 기도
- 제출기한 : 6월 23일(화) / 성전앞 봉헌함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7월 4일(토) 오전 6:30

● 영명축일 축하미사

- 일시 : 7월 2일(목)
- 축일이 7월이신 신자분들 대상으로 미사 때 안수 및 작은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 2026 여름신앙학교 참가신청 안내

- 주제 : 우리를 꿈꾸게 하는 꿈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루카 1,30)
- 3학년 ~ 6학년
 - 일시 : 7월 30일(목) ~ 8월 1일(토) / 2박 3일
 - 장소 :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살레랜드)
 - 참가비 : 120,000원(20명.선착순)
- 유치부 ~ 2학년
 - 일시 : 8월 1일(토) ~ 8월 2일(일)
 - 장소 : 구로3동성당(성당내 물놀이파크)
 - 참가비 : 25,000원
- 접수 : 6월 20일(토)12:00부터 입금순서로!
- 문의 : 교감 최웅석 베드로(010-5473-9476)

● 우리들의 정성(6월 10일 ~ 6월 16일)

• 교무금		6,365,000원
• 주일헌금	현금	5,265,500원
	신자앱	228,000원
• 감사헌금	방석류10만원 한익수50만원 김창현10만원 박상덕50만원 김지아10만원 나경민20만원 이태경 3만원 김도현10만원 김인기20만원 굴벌유치원2만원 최기수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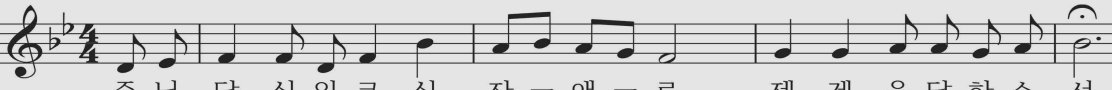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6/21	권태희	임종윤 장희석	안상록 손정주
6/28	한희숙	장희석 임종윤	윤상기 민옥경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6/21	옥윤필	김용진	최웅조 박용환
6/28	조홍환	도현만	하재민 옥윤필

성가번호 ♪ 입당 : 207 ♪ 예물준비 : 340, 342 ♪ 영성체 : 501, 165 ♪ 파견 : 201

화답송



주 님 당 신 의 크 신 자 - 애 - 로 제 게 응 답 하 소 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3 편 사 목

제 3 장 특수사목

제 1 절 청소년과 학생 사목

제 179 조 (부모의 의무)

가톨릭 신자들은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녀들을 가톨릭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교회법 제226.798조; 그리스도교교육선언, 6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4.25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20-25항; 사목회의 교육 의안, 5항 참조).

제 180 조 (사목구의 청소년/학생 사목)

1항 사목구는 교회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신앙의 참뜻을 터득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평등과 일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3항; 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1.15항 참조).

2항 사목구 주임은 자기 사목구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과 신심활동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그들이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5항).

제 181 조 (가톨릭 학교와 학생사목)

1항 가톨릭 학교는 자유와 사랑의 복음정신으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앙으로 조명된 교육을 통하여 인격성장과 인류문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8항; 사목회의 교리교육 의안, 26항 참조).

2항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학교 설립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따라 신자의 계속교육을 도모하고, 예비자를 위한 교리강의와 적어도 예비선교적인 종교강좌를 설치하며 이를 위한 전담사제나 종교교사를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804.805조; 한국 헌법 제31조; 사목회의 교육의안, 1-5항 참조).

제 182 조 (비가톨릭계 학교와 학생사목)

1항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청소년들이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사목회의 교육 의안, 4항 참조).

2항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전담사제가 없으면 교구의 교육담당사제와 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신자교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사제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그리스도교교육선언, 7항 참조).

제 183 조 (청소년/학생 사목 전담사제)

1항 교구 직권자는 청소년/학생 사목을 위한 전담사제를 임명하여야 한다.

2항 청소년/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13조; 사목회의 청소년사목 의안, 1-4.22항 참조).